

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20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관람연령 현실화를 반영하고, 『장애인복지법』 제30조에 의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정책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관람연령 현실화 반영 및 장애인 감면 조항 신설

- 유료공연 관람 가능 연령(8세)과 6세 이하의 어린이 관람료 면제조항이 상반되어 해당내용 삭제(안 제16조의1)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(안 제16조의4)

나. 법령용어의 순화

- 조례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어 조항을 보다 명확한 문구로 수정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3

□ 예산수반사항

-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: 붙임4

□ 사전예고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9. 7. 10. ~ 2019. 7. 30.

□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

- 방침결정문

[붙임 1]

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”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. 다만, 면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예술과장 김 창 섭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예술팀장 두 현 은
	담당자 성명·전화	오 봉 선 (행정 2064)

[불임 2]

신·구조문 대비표